

#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760호, **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 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, 2020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2019년도 결산결과 예치금과 결산 지적사항, 2020년도말 지출 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
- 나.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

○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조정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/세부사업		당초(A)	변경(B)	증감 (B-A)
합계		272,081	393,570	121,489
중 소 기 업 금 융 지 원		260,648	314,280	53,632
	중 소 기 업 직 접 융 자	215,000	265,000	50,000
	시 중 은 행 협 력 자 금 지 원	44,820	47,320	2,500
	기 타 비 용 자 성 사 업 비	828	960	132
	기 금 업 무 대 행 수 수 료		1,000	1,000
재 무 활 동		10,433	78,590	68,157
	재 정 투 용 자 기 금 원 리 금 예 수 금 상 환	2,618	2,618	-
	여 유 자 금 예 치	7,815	75,972	68,157
행 정 운 영 경 비		1,000	700	△300
	기 금 관 리 비	1,000	700	△300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 계 획			
항목	당초	변경	증감
합계	272,081	393,570	121,489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174,045	174,045	
공공예금 이자수입	3,000	3,000	
예치금회수	76,036	145,325	69,289
일반회계 전입금	19,000	71,200	52,200

(단위 : 백만원)

지 출 계 획				
항목	당초	변경	증감	
합계	272,081	393,570	121,489	
사 업 비	융자금	215,000	265,000	50,000
	이차보전금	44,820	47,320	2,500
	기타비용자성 사업비	828	960	132
	기금 업무 대행수수료	-	1,000	1,000
재 무 활 동	예치금	7,815	75,972	68,157
	예수금 이자	2,618	2,618	-
행정운영경비		1,000	700	△300

### Ⅲ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지난 3월,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관련 서울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자 일반회계중 **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**(652억원)을 당초보다 462억원 증액 편성한 바 있음
  - 동 계정의 경우, 기금운용부서가 지난 3월,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462억원을 동 계정의 수입계획중 전입금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
  - 수입계획 증가에 따라 지출계획도 연동하여 **중소기업 금융지원**(고유목적사업비)의 지출금액을 당초(2,606억 4,800만원)보다 17.7%, 462억원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나
  -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
-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'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어'
  - 지난 '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(692억 8,900만원)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(692억 8,900만원)에 계상하고, 지출계획에는 예치금(681억 5,700만원)과 고유목적사업비(11억 3,200만원)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과 8월,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정책사업간 지출계획을 일부 증·감 조정하기

위한 것으로

- 지난 '19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“정책사업”에는 재무 활동, 행정운영경비까지 모두 포함됨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한 바 있어

-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하고자 정책 사업간 일부 증·감 조정을 요청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

○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①**중소기업 금융 지원**(고유목적사업비)은 당초보다 20.6%, 536억 3,200만원이 증가하고, ②**재무활동**(예치금)은 당초보다 653.3%, 681억 5,700만원이 증가하며 ③**행정운영경비**는 당초보다 △30.0%, △3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

- 관련 법령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,

- 동 계정의 설치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과 전입금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의안을 제출한 것임에도 당초 의결된 결과와 비교하여 변경 규모가 몇 % 차이가 있는지 일체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어

- 동 안건을 심사·의결하는 의회가 제출된 의안에서 해당 변경규모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사안인지 각각 계산하고, 판단하라는

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어 향후 동 지출계획변경안과 같은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